

의안번호	2207909
의 퇴 인	이인선 의원
회 답 일	2025. 2. 20.
추 계 번호	25G06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의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제7조 제1항(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 업종을 삭제하여 모든 중소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
2	안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의 업종 제한을 삭제하여,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 -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취업한 청년 등** - (개정안) <u>전체 중소기업</u> 에 취합한 청년 등** * 주점, 전문직종, 병원 등을 제외하고 열거된 업종으로 한정 ** 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II. 미첨부 근거규정

1. 근거 규정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7조 제1항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① 안 제7조 제1항(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개정안에 따라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 업종을 삭제하여 모든 중소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적용을 확대할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수에 대한 세수효과 감소가 예상됨
 - 개정안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으로 열거된 업종을 삭제하여 모든 중소기업에 대하여 업종 및 사업장 소재지, 업종별 매출 규모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

[표 1] 현행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비율

(단위: %)

업종 구분	중기업		소기업 ¹⁾		비고
	수도권 안	수도권 밖	수도권 안	수도권 밖	
도소매/의료업		5	10	10	한도 1억 원 ²⁾
기타 업종		15	20	30	
통관대리 관련 서비스		7.5	10	15	
알뜰주유소	10	15	20	20	

주: 1) 소기업 판정 기준: 업종별 매출액이 「중소기업법 시행령」 별표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

2) 전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한도= 1억 원 - 상시근로자 1명×5백만 원

□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업종 및 사업장 소재지별 매출 규모에 따른 중·소기업 감면실적 자료 등이 필요하나, 정보가 부재하여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

- 법인세의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신고현황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대한 수입금액 규모별, 법인소재지별, 농림어업·광업 포함 14개의 업종별로 구분
- 소득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종합소득세 세액감면 신고현황에 따르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총금액만 확인 가능

[표 3]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실적: 법인세 및 소득세, 2019~2023년

(단위: 억 원)

		2019	2020	2021	2022	2023
수입금액 규모별		9,535	9,879	9,534	10,858	11,598
법인 소재지	수도권 안	3,797	3,872	3,978	4,366	4,520
	수도권 밖	5,739	6,007	5,555	6,491	7,078
	소계	9,536	9,879	9,533	10,857	11,598
법인 업종별 소계	도소매/의료	1,037	1,028	966	1,124	1,143
	서비스	947	1,098	1,208	1,460	1,542
	기타	2	0	1	2	2
	그 외 업종	7,549	7,753	7,359	8,272	8,911
	소계	9,535	9,879	9,534	10,858	11,598
소득세		10,680	9,995	12,632	13,738	13,130

주: 수도권은 법인소재지가 서울·인천·경기인 경우를 더한 값

자료: 국세통계포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신고현황」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종합소득세 세액감면 신고현황」, 각 신고연도

- 국세청 확인 결과, 법인세의 경우 14개 업종과 지역으로 구분은 가능하나, 소득세의 경우 개인사업자 주소지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접수되므로 사업장 주소지별 감면실적은 알기 어렵고,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소기업과 중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으로 분류하여 제공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별 매출 규모에 따른 중·소기업의 감면 실적 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움

② 안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개정안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세액감면의 업종 제한을 삭제하여 모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등으로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소득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현행은 대통령령¹⁾으로 규정하고 있는 업종에 취업한 청년 등에 대해서만 3년간(청년은 5년) 소득세를 70%(청년은 90%) 감면하고 있음
 - 개정안에 따라 업종제한이 삭제될 경우, 251개의 업종분류코드에 해당하는 업종이 추가로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것 파악됨
 -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17.1.)과 연계된 국세청 업종코드(전체 1601개)의 15.7%에 해당하는 수치임
-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감면대상에 신규로 포함되는 업종의 감면대상자 수, 평균소득 및 부담세액 규모 등을 파악하여 향후 감면액 규모를 추정해야 하지만,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워 개정안의 세수효과를 추정하기 어려움
 - 국세청 연말정산 신고자료의 경우, 전체 근로자에 대한 자료로서 신규로 취업한 청년, 노령자 등의 정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존재함
 - 개정안에 따라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업종에는 주점, 전문직종(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보건업(병원, 의원)이 포함되어 있어 종전 감면대상의 취업자와 다른 특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존의 감면실적을 활용하여 추계하는 방법도 적절치 않을 것으로 판단됨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수입 감소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이정훈	박연서
세제분석2과	이수인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정훈	02-6788-4669	nororand@assembly.go.kr